

대여금고 약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(적용범위) (생 략)	제 1 조(적용범위) (좌 동)	
<p>제 2 조 보관대상</p> <p>① <u>대여금고의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② 은행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<u>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, 부패성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임차인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 보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</p>	<p>제 2 조 보관대상</p> <p>① <u>대여금고의 보관대상이 위험물질이나 부패성 물질이 아닌 한 제한이 없습니다.</u></p> <p>② 은행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<u>위험물질, 부패성물질 등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</u>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임차인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 보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	<p>문구 추가</p> <p>문구 변경</p> <p>문구 추가</p>
제 3 조(계약기간) ~제 7 조(이용시간) (생 략)	제 3 조(계약기간) ~제 7 조(이용시간) (좌 동)	
<p>제 8 조 대여금고의 임의열람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u>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, 서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, 14 일 이내에 열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<u>이용자에게 사전</u></u></p>	<p>제 8 조 대여금고의 임의열람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<u>금고의 수리와 변경, 점포 폐쇄로 인한 금고의 이전 등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, 서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, 14 일 이내에 열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</u></p>	<p>문구추가</p>

<p>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은행이 임의로 열람하고 이후에 <u>고객에게</u> 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③ 제 ①항 및 ②항에 의해 임의 열람된 금고의 물품은 규정에 의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됩니다. 다만, <u>임차인에게</u>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은행이 임의로 열람하고 이후에 <u>임차인에게</u> 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③ 제 ①항 및 ②항에 의해 임의 열람된 금고의 물품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이용자,고객- >임차인</p> <p>규정에 의해 ->문구삭제</p>
<p>제 9 조(보증금) (생략)</p>	<p>제 9 조(보증금) (생략)</p>	
<p>제 10 조 거래 해지사유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임차인이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<삭제></u></p> <p>5. <u>은행이 통지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때</u></p> <p>6. <u>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금고의 이전, 교체 등으로 부득이 거래 해지가 필요한 때</u></p> <p>② <u>은행이 제 ①항 4호 및 6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은행은 해지일 전 영업일까지 임차인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</u></p>	<p>제 10 조 거래 해지사유</p> <p>① (좌동)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(삭제)</p> <p><u>4. 은행이 통지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때</u></p> <p><u>5. 은행이 금고의 이전, 교체 등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득이 거래 해지가 필요한 때</u></p> <p><u>② 은행이 제 ①항 제 5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은행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에 고객에게</u></p>	<p>삭제</p> <p>-3개월->3년</p> <p>-호 체상</p> <p>문구 수정</p>

<p>③ (생략)</p>	<p><u>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(좌동)</p>	
<p>제 11 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</p> <p>① <u>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은행은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임차인의 승인 또는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은행의 규정에 의해 보관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</p> <p>② <u>제 ①항에 의해 별도 보관 후 은행이 보관물품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경우 공탁,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,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에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 ①항,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</u></p>	<p>제 11 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</p> <p>① <u>계약기간 만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은행은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임의열람예정 통지하고 1개월 안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열람 및 은행의 규정에 의한 보관물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.. 은행이 별도 보관한 보관물품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1. 공탁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</u></p> <p><u>2.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에는 은행이 임의처분</u></p> <p><u>3. 처분이 곤란한 물품인 경우 은행이 임의 폐기</u>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② (좌동)</p> <p>③ <u>제 ①항 및 제 ②항의 사유로</u>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</p>	<p>-1년->3년</p> <p>①항으로 내용 이기</p> <p>-호 체상</p>

<p>임차인이 부담합니다.</p> <p>제 12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며,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-</p> <p>③ (생략).</p>	<p>부담합니다.</p> <p>제 12 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<u>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며,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은행이 임차인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거나, 알았을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③ (좌동)</p>	<p>문구 추가</p>
<p>제 13 조(대여.양도금지)~제 15 조(준용) (생략)</p>	<p>제 13 조(대여.양도금지)~제 15 조(준용) (생략)</p>	
<p><u><부칙></u></p> <p>(신설)</p>	<p><u><부칙></u></p> <p><u>이 약관은 2021.03.19 부터 적용합니다.</u></p>	<p>신설</p>